

제 2018-2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회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하여 당사 제 2018-2 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두산엔진(주) 기술센터 지하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 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기 부의안건들에 대한 결의는 두산중공업(주)와 '소시스웰투시 인베스트먼트제 1 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8년 3월 13일자 주식매매계약이 거래종결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후 주주총회부터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18년 5월 29일 ~ 2018년 6월 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별첨 1. 부의안건 현황 1부

2018년 5월 24일

두 산 엔 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동 철



직인
생략

정관 일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제 1 조 (상호) 회사는 “ <u>두산엔진주식회사</u>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 <u>Doosan Engine Co., Ltd.(Doosan Engine)</u> ”라 표기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	제 1 조 (상호) 회사는 “ <u>에이치에스디엔진 주식회사(HSD 엔진 주식회사)</u>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 <u>HSD Engine Co., Ltd.(HSD Engine)</u> ”라 표기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	사명 변경
제 4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engi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sdengi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 반영
제 8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② (생략)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략) 2. ~ 4. (생략) ④ ~ ⑧ (생략)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 8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용어 순화 및 상법 인용조항 오류 수정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u>대표이사</u>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생략) ③ 이사회 의장은 제 2 항 소정의 <u>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u>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u>이사회 의장</u>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 의장은 <u>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29 조 제 4 항을 준용한다.</u>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신 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 년 06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시기 반영

※ 정관 시행일 : 두산중공업(주)와 ‘소시에스웰투시 인베스트먼트제 1 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8 년 3 월 13 일자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

이사 후보자 약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사내이사	고영렬	1956.08.22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前) 대우조선해양(주) 사업총괄 부사장 現) 법무법인 광장 조선해운 전문위원	없음	없음
		이사회			
사내이사	김관식	1968.12.20	전북대 경영학 학사 前) 금호타이어(주) 상무 現) 케이에프(주) 대표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이병국	1964.07.27	경북대 법학 학사 前)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現) (주)소시어스 대표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정승원	1973.02.04	전남대 무역학 학사 前) 동아탱커(주) CFO 現) 웰투시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김락구	1971.12.25	한국외국어대 무역학 석사 前) 신한은행 IB 그룹 M&A 실 現) (주)소시어스 전무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이남령	1976.12.23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학사 前)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주) 부장 現) 웰투시인베스트먼트(주) 전무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사외이사	홍성표	1953.03.03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대전대 법학 박사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現) 엠벤처투자(주) 사외이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계연	1960.11.05	전남대 경영학 석사, 국민대 경제학 박사 前)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現)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외래교수 NH 농협캐피탈(주) 사외이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김철	1964.03.18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現) 법무법인 정해 대표변호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김동희	1969.10.09	서울대 경영학 석사 前)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現) 호연회계법인 전무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약력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추천인				
홍성표	1953.03.03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대전대 법학 박사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사회	現) 엠벤처투자(주) 사외이사			
이계연	1960.11.05	전남대 경영학 석사, 국민대 경제학 박사 前)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사회	現)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외래교수 NH 농협캐피탈(주) 사외이사			
김철	1964.03.18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사회	現) 법무법인 정해 대표변호사			
김동희	1969.10.09	서울대 경영학 석사 前)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사회	現) 호연회계법인 전무			

※ 감사위원의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시까지임.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당사가 공시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